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석사학위논문

전남 중소기업의 FTA활용사례 분석과
활성화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홍 준 의

전남 중소기업의 FTA활용사례 분석과 활성화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ME in Jeonnam Province with FTA Use
Case Analysis and the Support Plan of Revitalizing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홍 준 의

전남 중소기업의 FTA활용사례 분석과 활성화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송 윤 아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홍 준 의

홍준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전 의 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석 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송 윤 아 (인)

2016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
1. FTA활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	4
2. FTA지원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6
 제2장 한국의 FTA지원정책 분석	 9
제1절 국가적 차원의 FTA추진전략	9
1. 新통상 로드맵	9
2. 자유무역협정 제2라운드	10
제2절 기관별 FTA지원정책 현황	11
1. 산업통상자원부	11
2. 관세청	13
3. 한국무역협회(FTA종합지원센터)	14
4.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15
5. 기관별 FTA지원정책 비교	16

제3장 FTA활용률 및 기업 활용현황 분석	18
제1절 주요 산업별 FTA활용률	18
1. 산업별 수출활용률	18
2. 산업별 수입활용률	19
제2절 FTA체결 국가별 교역 동향	21
1. 對 칠레 교역동향	21
2. 對 EFTA 교역동향	22
3. 對 아세안 교역동향	23
4. 對 유럽(EU) 교역동향	24
5. 對 미국 교역동향	25
제3절 중소기업의 FTA활용현황 분석	26
1. 업종분포 및 FTA협정 활용현황 분석	27
2. FTA관심도 및 이해도 현황	29
3. FTA활용 관련 애로사항	30
4. FTA활용 현황분석 시사	31
제4장 FTA활용 사례분석과 활성화 정책제언	34
제1절 FTA활용 사례 분석	34
1. 수출업체 협력사의 FTA활용 사례	34
2.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 활용 사례	36
3. 인증수출자제도 활용 사례	39

4. FTA사후검증 대응 사례	42
제2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48
1. 분석결과의 시사점	48
2. 중소기업의 FTA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51
제5장 결 론	53
<참고문헌>	55

【표목차】

<표 1-1> FTA활용 선행연구의 시사점	8
<표 2-1>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요약	12
<표 2-2> 관세청 지원사업 요약	13
<표 2-3>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요약	14
<표 2-4>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 요약	16
<표 2-5> 각 기관별 FTA지원사업 요약	17
<표 3-1> 한국 주요산업의 협정별 수출 활용률	19
<표 3-2> 한국 주요산업의 협정별 수입 활용률	20
<표 3-3> 전라남도의 對 칠레 교역동향	21
<표 3-4> 전라남도의 對 EFTA 교역동향	22
<표 3-5> 전라남도의 對 아세안 교역동향	23
<표 3-6> 전라남도의 對 유럽 교역동향	24
<표 3-7> 전라남도의 對 미국 교역동향	25
<표 3-8>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프로세스	32
<표 4-1> N사의 사례 분석	35
<표 4-2> 통칙의 명칭	37
<표 4-3> 품목분류사전심사	38
<표 4-4> S사의 사례 분석	39
<표 4-5>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구분	40
<표 4-6> K사의 사례 분석	42
<표 4-7> 주요 협정별 FTA사후검증 상세절차 1	43
<표 4-8> 주요 협정별 FTA사후검증 상세절차 2	44

<표 4-9> 주요 협정들의 FTA사후검증 유형	45
<표 4-10> FTA사후검증 동향	45
<표 4-11> B사의 사례 분석	47
<표 4-12> FTA컨설팅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초점	49

【그림 목차】

<그림 2-1> FTA활용지원사업 추진체계	15
<그림 3-1> FTA컨설팅 참여업체 업종별 현황	27
<그림 3-2> 해당되는 FTA협정(복수응답)	28
<그림 3-3> FTA활용 현황	28
<그림 3-4> FTA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	29
<그림 3-5> FTA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30
<그림 3-6> FTA활용 애로사항(복수응답)	30
<그림 4-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7
<그림 4-2>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양식 및 사례	38

ABSTRACT

A Study on SME in Jeonnam Province with FTA Use Case Analysis and the Support Plan of Revitalizing

Hong, Jun-Ui

Advisor : Prof. Song, Yun-A, Ph.D.

Department of FTA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fta utilization case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n Jeonnam and research on policy support measures.

In this study, i tried to derive efficient FTA support measures based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rade in the Jeonnam, cases of support by Jeonnam FTA Utilization Support Center, and survey results on problems of utilization of FTAs by import and export companies

The research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the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improve the FTA utilization rate of import / export enterprises from each agency. But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till have some problem,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utilization of FTAs and problems, it can be divided into human resource problem and difficulty of control of origin.

This study analyze the problems that have come up through the case and deriv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upport project and try to present a policy that can improve the FTA usage rate.

In order to solve complaints concerning the utilization of FTAs by SMEs, improvement of national support projects is necessary. Currently, the majority of support projects are often single-ended, ended with business. The institution must enable sustainable support, not single-shot, through ongoing

follow-up management of participating companies. They must prepare a scheme that allows companies to share the history of them with support organizations and support additional support projects necessary for enterprises from multiple organizations for each specialized field. In addition, companies constantly participate in institutional support projects and nurture the independence degree of utilization of FTAs. If support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gradually improve in this way, FTA utilization of SMEs will improv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04년 4월 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시작으로, 2016년 7월 15일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까지 한국은 총 15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52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다. WTO 다자주의체제에서 탈피하여,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대가 되고 있다. WTO에 따르면, WTO협정이 발효되기 전인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체결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은 불과 124개였으나, 1995년 이래 2008년까지 약 300개의 RTA가 통지되었다(윤영호, 2010). 발효된 RTA 205개 중 121개 RTA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WTO회원국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FTA에 참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FTA가 확산되고 있는 까닭은 상품무역의 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경제통합과 다른 국가들끼리의 FTA에 의해 자국의 시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외교적인 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저돌적인 FTA추진전략으로 협정들을 맺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현재 FTA시대에 접어든지 12년이 지났다. 이에, 정부(2015)는 그동안의 FTA추진 성과와 세계적인 FTA추세에 따라 새로운 통상 로드맵인 “자유무역협정(FTA) 제 2라운드 전략”을 발표하였다.

“자유무역협정 제 2라운드”에서는 미국, 중국, EU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체결 완료된 시점에서, 앞으로의 신규FTA추진에 따른 새로운 통상전략의 필요성과 기 구축된 FTA플랫폼을 토대로 FTA통상의 중심국가로서 메가FTA(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하는 무역자유화협정)에 대응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 체결된 FTA들 중에서 활용도가 낮은 한-아세안FTA, 한-인도CEPA 등 개도국과 체결한 FTA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말하였다.

수출입시 FTA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국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같은 민간기관 등 여러 조직에서 중소기업과 수출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5년 한국의 전체 수출입 교역에서 FTA활용률은 71.9%를 기록하였으며(관세청, 보도자료 2016), 관세청 및 무역협회 등 FTA지원기관 주최의 FTA 활용 성공사례 발표에서 매해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을 만큼 FTA활용을 통해 그 혜택을 향유하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FTA활용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산업별·지역별 연구들이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라남도지역에 집중한 선행연구들의 수는 매우 적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라남도의 농·수산 산업분야에 대한 피해대책 및 영향분석에 초점을 두어, 그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된 연구·조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정철기, 2008; 이춘비, 2010; 삼일회계법인, 2008).

FTA활용과 관련하여 한·중FTA에 따른 농·수산분야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김창범, 2013)와 중소기업의 FTA활용요인에 관한 연구(정윤호, 2016) 등 전라남도지역의 FTA활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점차 진행되고 있으나, FTA활용에 초점을 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전라남도 중소기업들의 FTA활용도 분석과 FTA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FTA활용지원 사업들의 현황분석 및 개선 등 전라남도 지역에 집중한 FTA활용도 제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라남도지역의 경우 철강과 화학업종 관련 대기업 협력사 및 기타 제조업과 농·수산가공식품 업종이 중소기업 수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철강과 화학분야의 경우 전라남도 수출에서 또한 90%이상의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집약 산업들의 품목은 기체결된 FTA들의 활용 수혜품목들이 있는 업종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FTA약소지역이라 인식되는 전라남도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재까지 기체결된 FTA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전라남도내 중소기업들의 FTA활용현황을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을 두어, 전라남도 내의 수출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을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통해 기업들의 FTA활용도와 주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FTA지원제도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지원제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앞으로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한국의 FTA 활용도와 전라남도의 수출현황을 비교하여 FTA 발효 후 수출입 통계분석을 통해 FTA 활용 효과가 있었는지 보았다. 또한 각 기관별 FTA 지원시책·제도의 현황분석 및 지원제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라남도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기업 현장방문 컨설팅한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실제 중소기업의 FTA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FTA 지원사업이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TA가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애로사항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FTA 활용 애로사항의 해결방안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연구방법은 문헌적 방법을 통해 앞서 나온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및 타 지역에서 연구된 FTA 활용에 관한 연구 및 FTA 활용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과 각 기관별 지원시책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수집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본 연구는 모두 6개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에서 다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가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배경과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약술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 및 방법과 구성을 다루었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다루었다. FTA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FTA 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가 이루어 졌다.

제 2장에서는 한국의 FTA 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FTA 활용을 진행해야 할지 분석하였으며, 주요 기관들의 FTA 지원사업을 정리하였다.

제 3장에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제 1절에서는 한국의 전체 FTA 활용률을 보고, 전라남도의 FTA 시대에 접어들어 2004년 이후 수출입 통계분석을 통해 전라남도의 FTA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 2절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주요 FTA 국가별 교역동향을 분석하여 FTA 활용 시 혜택을 받는 범위를 측정코자 하였다. 제 3절에서는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 1절에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FTA활용사례 중 주요 사례별로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사례와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가진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 그리고 지원사업을 분석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FTA활용 관련 선행연구 분석

정인교(2010)는 “중소기업의 FTA활용”에서 중소기업들은 대체적으로 FTA활용에 대한 관심과 그 인식이 낮고, FTA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원산지결정기준¹⁾이 협정마다 각기 다른 스파게티불효과²⁾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 전반적인 FTA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FTA활용 종합지원 대책으로 원산지증명 발급 간소화 등 절차개선과 FTA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의 역량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원산지 기준에 관한 계산이 FTA를 활용하는데 가장 복잡한 요인이며, 각 업계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의 활용을 포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FTA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FTA 관련정보 및 해외시장정보 등을 지원하는 종합대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조미진 등(2011)은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에서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 이후 한국의 FTA정책은 ‘협상’에서 ‘이행’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행과 관련하여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부와 학계, 각 분야별 기업들의 관심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 원산지 기준이 3개 이상의 상이한 결정기준으로 갖고 있

-
- 1)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 2) 스파게티불 효과 :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인한 각 국가마다 상이한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을 일컫는 말로,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가락들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스파게티 불 효과라고 부른다.

어, 기업들에게 각각 맞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자재 조달 및 생산 등 일련의 방법마련이 기업들의 부담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FTA원산지규정은 체결국간 산업, 무역, 투자 등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지는 매우 중요하다 보았다. 또한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열악한 재원으로 인해 FTA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중소형 규모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 교육 과정 및 컨설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FTA 협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업계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이미 체결된 FTA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과 국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감소시켜,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였다.

강다현(2013)은 “수출중소기업의 시장환경, 수출능력, FTA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에서 수출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것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FTA활용 전략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FTA활용으로 인한 관세절감혜택으로 수출량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하며, 수출성과를 내는데 있어 이제는 더 이상 피할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출중소기업들이 FTA활용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FTA별 복잡한 기준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중소기업 내에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여러 기관에서 시행 중인 FTA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의 확대와 전문 자격증인 원산지관리사의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FTA활용 능력을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재권(2013)은 “FTA 활용역량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한국과 아세안FTA를 중심으로”에서 한국과 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FTA 활용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특히 벤처·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고경영자요인을 포함한 기업의 내부자원에 있다고 보았으며, 중소벤처기업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자원의 경쟁력 향상 방안과 중소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 수출조직관리, 수출전략수립 등과 같은 기업경영에 관한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FTA와 관련한 제도를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출지원 제도를 개선하면 중소기업들의 수출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배명렬, 박천일(2014)은 “한국무역업계의 FTA평가와 활용 제고방안 연구”에서 한국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발효된 FTA에 대한 평가와 활용 애로사항, 앞으로 추진해야할 정책방향 등을 설문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중소기업의 FTA활용도를 높이고 향후 발효될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 정비를 통한 중소기업의 비용적 부담 절감과 스파게티볼 효과 완화가 필요하다 보았다. FTA관련 정보는 많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제공되므로 FTA관련 정보제공 방법의 개선의 필요성과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강화를 말하였다.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FTA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함으로써 FTA활용을 유도해야 하며, CEO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CEO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들을 활성화한 교육의 강화를 말하였다. 또한 각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향후 체결될 FTA에서 우리산업과 기업의 이익이 협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미 체결된 FTA라도 다자간 FTA를 통해 업계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FTA지원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윤영호(2011)는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FTA전문가 컨설팅 수행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학습촉진과 컨설팅 지식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전문지식과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적인 전제로 보았다. 컨설턴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공유 인터페이스(Shared Interfaces)라고 할 수 있는 컨설팅 방법론과 툴(Consulting Methods & Tools)을 매개로 다양한 지식이전 메커니즘을 통하여 컨설팅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는 클라이언트-컨설턴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클라이언트의 학습과 지식이전을 촉진하는 컨설팅방법론(Methods & Tools)의 개발과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격적인 FTA시대에 접어들면서 통상환경의 변화가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가적인 차원 및 FTA유관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하는지,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FTA활용 실태와 그 역량은 어떠한지, 그리고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의 개

선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김경호(2016)는 “FTA 컨설팅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실증적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각 기관별 FTA컨설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고 보았으며, 또한 경영층의 FTA 컨설팅 활동에 대한 관심과 FTA 활용기반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향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FTA 컨설팅 활동에 대한 경영층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인교 등(2010)은 “우리기업의 FTA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에서 한국 정부는 FTA 협상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지만, 기업들의 FTA 활용 수준을 제고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많지 않았다고 보았다. FTA 활용 수준 제고를 위한 국내 FTA 이행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다수 FTA를 체결한 현 시점에서는 추가 FTA 체결보다는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았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협정 체결과 대국민 홍보에만 주력하고, FTA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보았다. 우리 기업들은 FTA를 활용함에 있어 많은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의무에 대한 부담, FTA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기업의 원가정보 제공 기피, 산업별 협회의 기능과 역할 취약, 원산지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 하에 제공하는 전문기관 부재 등이 FTA활용의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TA 활용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의 FTA 활용정보 제공 및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비중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재철(2014)은 “우리나라 정부의 FTA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정부기관 FTA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첫째, FTA전문가의 전문성 제고와 전문가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컨설팅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FTA전문가의 자격 및 경험기준을 통한 수입단가 기준으로 컨설팅 능력편차에 비해 상관없이 받는 보수료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의 보수료 수준이 낮아 유능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없는 현황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FTA지원업무의 범위와 역량에 따른 단가산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FTA혜택을 향유하는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부담을 가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확대를 말하였다.

〈표 1-1〉 FTA활용 선행연구의 시사점

저자	시사점
정인교(2010)	원산지, 물류비, 해외시장정보 제공이 필요함
조미진(2011)	각각 원산지 기준이 달라 기업의 부담요인으로 나타남
윤영호(2011)	전문인력과 정보의 중요성 강조
강다현(2013)	기업 수출능력이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미침
심재권(2013)	최고경영자와 내부자원 요인이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배명렬(2014)	최고경영자의 관심도가 FTA활용에 영향이 미침
이재철(2014)	FTA전문가들의 컨설팅 교육과 수입단가 강화
김경호(2016)	FTA 활용역량과 관련된 요인들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제2장 한국의 FTA지원정책 분석

제1절 국가적 차원의 FTA추진전략

무역에 따른 경제의존도가 큰 한국은 다자무역체제인 GATT와 WTO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무역국가로서 경제발전을 위한 무역 및 통상저변의 확대는 필수 불가피 하며, 한국 또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 양자간 FTA체결을 통한 FTA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은 저돌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이미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은 완료되어 경제영토 3위 국가가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전략으로는 2013년도에 발표한 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3)」과 2015년도에 발표한 「新FTA 추진 전략, 자유무역협정 제 2라운드4)」로 볼 수 있다.

1. 新통상 로드맵

정부(2013)의 新통상 로드맵의 경우 한-미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그동안의 통상에 대한 점검과 향후 방향을 논하였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최근의 메가FTA등 통상흐름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교섭 추진과 산업·자원 협력과 연계한 통상정책 추진을 말하였다. 메가FTA의 흐름에 대응 및 신흥국과의 새로운 FTA체결을 위한 맞춤형 통상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국내정책과의 연계 강화로 FTA체결에 따른 성과의 국내공유 확대, 아직 FTA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상정책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FTA체결을 통한 시장창출 성과가 중소기업의 육성·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내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 기

-
- 3) 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교섭-이행-국내대책이 단일 창구(single window)로 통합됨에 따라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추진한 통상 로드맵.(2013.6.13.)
 - 4) 新FTA 추진 전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전략적 FTA 추진”의 일환으로, 향후 세부적 FTA 정책 방향을 담은 “新FTA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2015)

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FTA체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분야(농·수산업 등)에 대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기업 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FTA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무역구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피해기업을 보호코자 하였다.

기존의 정부위주 통상정책이 아닌 정부 3.0 기조에 따라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통상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관 협업과 소통을 위한 통상산업 포럼, 통상정보 One-stop 서비스 및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하여 관련부처, 기업, 협회와 ‘통상 협업 커뮤니티’를 구축코자 하였다.

2. 자유무역협정 제2라운드

2015년에 발표한 “新FTA 추진 전략, FTA 제 2라운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⁵⁾국가별·지역별 FTA 세부 추진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으로, 2013년 6월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을 좀 더 구체화하여 구체화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Mega) FTA⁶⁾에의 적극적인 대응, ② 기체결 FTA의 개선, ③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 3대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체결된 FTA활용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여 Mega-FTA에 적극 대응하며, 아세안·인도 등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FTA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주요 신흥시장 진출 확대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여타 기체결 FTA의 경우도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FTA 체결을 통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 각 분야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신흥국 중심의 양자FTA체결을 목표로 주로 경제통합 수준이 높은 중미 6개국⁷⁾과 상품, 서비스, 규범 등 주요 분야를 모두 포함

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계획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통일시대 준비라는 기초 아래 59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됨
 6) 메가(Mega) FTA,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하는 무역자유화협정
 7) 중미 6개국(SIECA, 중미경제통합기구)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중남미 및 아랍지역과의 FTA체결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이다.

제2절 기관별 FTA지원정책 현황

15개의 FTA가 체결된 지금, 이미 국가 각 기관별로 FTA지원사업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FTA체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국에 17개의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투자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과 관련된 기관이라면 전부 FTA관련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 수출유관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그룹화하여 안내하는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가이드 북』을 만들었다. 각 분야별·기관별 지원사업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지원사업의 중복이 많으며, 이러한 내용의 공유가 부족하여 기업들에게 중복수혜가 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관들의 사업내용만 분석하여 FTA활용지원사업의 큰 틀을 보고자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던 FTA지원을 통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범부처 민관 합동 FTA활용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지역별 FTA활용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FTA활용을 위한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직접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국가적으로 FTA활용에 대한 홍보를 주로하고 있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나 우수기업 선정, TV등을 활용한 매체광고로 FTA활용 촉진 전반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들의 활동을 점검 및 감시하는 역할을 진행하여 각 지역별 차별 없는 FTA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표 2-1>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내용
업종별FTA활용 콘텐츠 개발	- 업종별·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업종별 FTA 실무자 교육 실시
FTA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FTA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기업·학생 부문)
동반성장 FTA 활용 부문 포상	- 수출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동반 성장을 추진하여 기업의 FTA 경쟁력을 향상한 우수사례를 선정, 공로 포상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선정·지원	- 공신력 있는 단체가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협력업체의 자율적 원산지 관리 역량을 제고 (선정 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우대)
무역조정지원	-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 (제조업, 서비스업)에게 융자 및 컨설팅, 근로자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
FTA 알림	- 함께하는 FTA(월간지) -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특성화고 FTA 활용 교육	- 중소기업의 여건에 적합한 원산지 실무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졸업 예상자를 대상으로 FTA 교육 시범사업을 실시
FTA원산지관리 인력 채용지원	-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사를 신규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1인당 1년내 1,080만원을 지원, 누적 3~4명 한도
FTA e-러닝	- FTA 활용방법을 사이버 공간에서 안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www.fta.go.kr)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가이드 북』, 2014, pp. 24-60.

2. 관세청

관세청의 경우 FTA환경하에서 특혜요건을 적용받기 위한 컨설팅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을 위한 컨설팅과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HS 품목분류 지원을 지원하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과 심사를 맡아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기업들의 작성내용 검토 및 수정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한다.

<표 2-2> 관세청 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내용
FTA재직자 교육	- FTA 활용사례 관세행정 실무 교육
FTA 컨설팅	-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FTA활용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①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②인증수출자 인증, ③검증사전 진단, ④사후관리(1개월) 등을 패키지식으로 지원 -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FTA 원스톱 지원센터	-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업상담관이 FTA 활용애로 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해결책 제시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 제도	-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사전 확인해 주는 제도
품목분류사전 심사 제도	-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품목분류 조기 심사 요청제도	- 민원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로 단축하여 심사하는 제도
「FTA무역 리포트」 제공	- 중소기업 CEO 맞춤형 FTA 정보 제공(분기 1회)
무역사절단 FTA교육·컨설팅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
인증수출자 갱신 간소화	- 기업이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면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인증을 갱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가이드 북』, 2014, pp. 24-60.

3. 한국무역협회(FTA종합지원센터)

한국의 무역전문 조직인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민관합동 조직인 “FTA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FTA활용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FTA컨설팅부터 교육, 설명회까지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FTA1380이라는 중소기업의 FTA 문의와 관련하여 원스톱 상담을 지원 중이다.

<표 2-3>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내용
FTA1380	- 전국 어디에서든 FTA 활용 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결지원 전화 - 온라인 FTA1380(www.fta1380.or.kr)에서도 업종별·협정별·어로 요인별 전문 상담 가능
품목별 실무 매뉴얼	- FTA 수출이 많고, 영세기업 품목의 실무매뉴얼 발간 - 자동차부품, 기계(밸브), 섬유(합성섬유), 화학
FTA 현장방문 컨설팅	- FTA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 FTA활용을 위한 현장방문 컨 설팅을 제공
공급망 중심 FTA활용 교육	- 수출업체와 협력업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원산지 관리 교육 실시
「FTA알리미」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CEO 대상 FTA 정보 제공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FTA School), 업종별 특화교육, 원산지 시스템 교육 등
무역사절단 FTA 교육· 컨설팅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가이드 북』, 2014, pp. 2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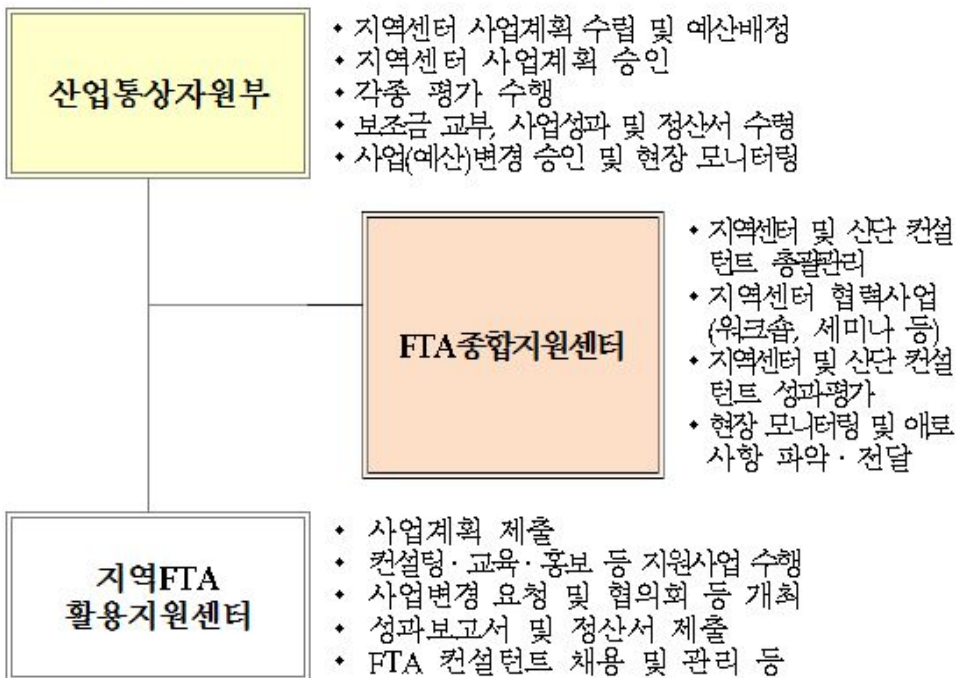
4.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전국 광역시·도 17개 센터 중 전라남도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센터로, 한국무역협회의 FTA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FTA컨설팅, 교육, 설명회를 전라남도 지역에 맞춰 진행 중이다. 지역 FTA센터들의 경우 FTA활용 지원의 최전방에 있는 기관이며, 기업들을 현장에서 FTA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FTA센터들의 경우 산업부 지침에 따른 공통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자 지역별 특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본적으로 컨설팅, 교육, 심포지엄 및 설명회, 네트워크 강화, 홍보사업을 진행해야하는 지침과 함께 해외마케팅 지원이나 박람회 지원 등 각 지역 센터별 특화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림 2-1> FTA활용지원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FTA활용지원센터 활용지침』, p. 6.

<표 2-4>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 요약

사업명	내용
FTA 컨설팅	-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활용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기업 증빙자료 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무료로 발급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
수출금융 설명회	-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
지역특화 매뉴얼 발간	- 농수산물식품의 중국 수출 가이드북 제작·배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가이드 북』, 2014, pp. 24-60.

5. 기관별 FTA지원정책 비교

정부 기관별 FTA지원 현황을 차례로 살펴보면, 기관들의 FTA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의 FTA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매해 국정감사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여건과도 관련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관리에 대해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시작한다. 수출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은 없이, 거래처 유지의 형식의 FTA활용이 많다. 또한 FTA업무 난이도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FTA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FTA지원제도가 FTA혜택이 실질적으로 없는 중소기업에게 FTA지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이 정부 사업 참여를 저해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이재철, 2014).

그러나 현재는 비용적 소모가 있던 컨설팅사업의 경우 전부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우 금전적 부담이 없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FTA원산지관리 등 어려움을 느끼는 FTA활용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5> 각 기관별 FTA지원사업 요약

기관	주요업무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콜센터 1380 OK FTA 컨설팅
FTA PASS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Trade 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S 코드세율, 규제정보 검색
U FTA KOREA	원산지관리,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 시스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원산지증명(기관발급)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해외조달정보센터	WTO/FTA 정부조달협정 국가별 해외조달시장정보 해외조달제도 및 절차
KOTRA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투자정보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아카데미 운영 원산지관리사/실무사 자격시험
UNI PAS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 Trade Hub	전자무역 FTA-KOREA(원산지시스템)
섬유산업FTA지원센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가능 원사기업정보 섬유생산기업정보시스템
U FTA Agri	농수산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자금 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	FTA기금·사업
무역협회	우수컨설팅사례 자격시험 차세대인력양성 FTA School 글로벌 마케팅 바이어 검색 무역정보 컨설팅 유형 및 신청정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main/> 내용 요약

제3장 FTA활용률 및 기업 활용현황 분석

제1절 주요 산업별 FTA활용률

FTA가 발효되면 상대국가로 수출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한국으로의 외국인 투자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선진 경제권과의 교류를 통한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등으로 실질 GDP증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유영석, 2013) 또한 특혜관세를 통해 주력 수출품목들의 수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들의 FTA발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세청 FTA포털에서 한국의 주요산업별 FTA수출 및 수입 활용도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라남도의 수출입 현황 및 각 FTA국가별로 FTA발효 후 수출입 금액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FTA 발효 1년이 지난 협정들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1. 산업별 수출활용률

관세청은 FTA활용지원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10월부터 각 산업별 FTA활용률 통계를 공개하였다. 산업부 통계분류코드(MTI) 기준에 따라 발효 1년이 지난 11개 협정, 49개국을 대상으로 산업별로 세분화한 FTA 통계를 새롭게 공개했다. 농림 수산물을 비롯하여 한국의 주요산업별로 각 협정별 수출입 활용률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각 협정별 수출에 대한 FTA활용률은 70~80%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지난 2007년 발효됐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세안 각 회원국들의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등으로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 애로사항과 함께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양허가 20~50%로 그치는 등 개방수준이 매우 낮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일부 국가의 시장개방 시기가 늦어지는 것 역시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도 전반적인 FTA들의 높은 활용률을 볼 수 있다.

〈표 3-1〉 한국 주요산업의 협정별 수출 활용률

(단위 : %)

협정 산업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합계	80.6	82.4	46.8	65.1	86.0	85.8	72.5	78.8	78.5	89.3
농림 수산물	51.0	84.1	48.0	62.2	71.1	37.3	51.6	51.6	54.2	62.6
광산물	95.0	87.0	21.0	65.8	74.2	45.9	79.9	52.3	4.3	2.3
화학 제품	73.4	49.3	59.7	58.9	77.4	25.3	74.7	77.6	45.9	67.4
고무 및 가죽	79.1	93.4	36.7	64.4	89.1	21.9	85.6	87.8	69.6	84.1
섬유류	50.8	74.2	31.8	33.6	85.4	46.2	73.9	89.7	54.8	39.6
생활 용품	62.5	23.7	35.6	56.5	74.1	45.5	48.3	62.9	42.2	61.0
철강 금속 제품	65.3	62.5	61.0	77.6	74.2	14.1	77.9	78.5	74.7	50.7
기계류	87.8	92.0	55.1	62.7	91.2	98.5	71.4	78.8	91.1	93.9
전자 전기 제품	53.7	80.0	41.9	48.1	80.6	70.9	67.7	69.9	52.7	71.9
잡제품	30.9	20.8	63.4	64.7	77.8	73.2	43.1	57.6	49.7	35.3

자료 :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

2. 산업별 수입 활용률

각 협정별 전체 수입에 대한 FTA 활용률은 55~99%로 협정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매우 높은 편이다. 칠레의 경우 첫 FTA 발효국이며, 수입 시 FTA 활용률이 99%로 거의 모든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는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출과 마찬가지로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의 경우 각 후진국의 통관 절차 및 관세 행정 등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수입 활용률이 낮

은 편이다. 상대국 바이어들 또한 원산지 규정 이해가 낮다. 그래도 수입 또한 전반적으로 FTA활용률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3-2> 한국 주요산업의 협정별 수입 활용률

(단위 : %)

협정 산업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합계	99.1	55.1	76.7	57.0	71.5	66.8	69.5	63.9	78.4	75.1
농림 수산물	98.3	78.4	79.9	50.2	85.7	91.7	89.5	67.3	97.1	91.8
광산물	100	12.4	58.2	11.0	55.9	38.4	37.5	97.2	55.2	50.5
화학 제품	99.2	79.4	79.2	74.1	73.3	93.2	77.2	65.2	88.9	49.1
고무 및 가죽	84.9	50.8	77.5	91.5	78.7	97.7	78.8	93.3	78.9	78.7
섬유류	0	40.6	94.3	76.6	61.8	83.5	73.6	30.1	65.7	77.0
생활 용품	0	82.9	87.4	67.4	61.5	1.6	69.5	34.4	82.9	83.7
철강 금속 제품	99.3	44.0	87.6	94.3	55.9	98.1	44.2	66.1	91.3	95.0
기계류	0	50.1	53.9	53.2	76.8	0	62.2	77.2	41.8	40.2
전자 전기 제품	0	41.9	69.1	58.5	56.4	0	57.0	62.4	12.7	59.9
잡제품	0	92.0	77.6	56.1	55.5	100	69.0	94.6	32.5	46.3

자료 :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

제2절 FTA 체결국가별 교역 동향

1. 對 칠레 교역동향

한국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의 교역동향을 발효기준인 2004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TA발효 첫째 전라남도의 對칠레 수출액이 약 10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명백한 FTA발효효과에 따른 수출량 증가라 파악되며, 그 후 수출 금액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래도 FTA발효 전보다는 3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이다(한국무역협회, www.stat.kita.net).

〈표 3-3〉 전라남도의 對 칠레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

년월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	66	-21.5	151	7.6
2014	84	-21.8	140	49.4
2013	108	-24.4	94	24.8
2012	142	-13.7	75	57.0
2011	165	-77.1	48	-36.1
2010	719	27.9	75	106.1
2009	562	-35.2	36	-71.9
2008	867	15.0	129	21.8
2007	754	151.3	106	998.9
2006	300	147.3	10	20.5
2005	121	360.8	8	-64.0
2004	26	32.0	22	-2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데이터(www.stat.kita.net)

2. 對 EFTA 교역동향

EFTA⁸⁾와의 FTA는 2006년에 체결되었으며, 한국이 발효한 3번째 FTA이다. 스위스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국가는 스위스라 볼 수 있다. 2005년까지 교역이 거의 없다가 발효년도인 2006년도에 수출금액이 약 12,000%나 대폭 늘어난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수입 금액 또한 10%가까이 증가하였다. 주요 교역품목은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의 경우 화학공업제품이고, 노르웨이의 경우는 화학공업 제품과 섬유류의 수출이 주력수출 산업이다. FTA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이 개척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표 3-4〉 전라남도의 對 EFTA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x)

년월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3	-48.4	98	-38.1
2014년	7	203.0	159	106.7
2013년	2	-98.9	77	-66.5
2012년	200	-16.0	230	-0.1
2011년	238	-66.2	230	287.8
2010년	703	27,190.6	59	8.4
2009년	3	79.7	55	7.6
2008년	1	-98.9	51	-34.0
2007년	125	20.6	77	87.6
2006년	104	12,391.0	41	9.4
2005년	1	-9.4	38	7.9
2004년	1	-99.3	35	-35.4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데이터(.www.stat.kita.net)

8) 유럽자유무역연합 : EFTA는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제협력체.

3. 對 아세안 교역동향

첫 번째 거대 경제권과의 FTA인 아세안의 경우 2007년에 발효되었다. 그 전에 싱가포르와의 FTA가 2006년에 발효되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기본관세자체가 거의 무관세인 국가라 수출에 따른 FTA특혜세율 혜택은 미미하였다. 전라남도의 對아세안 수출의 경우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발효 첫해인 2007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수출량이 32.1%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FTA발효 직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율은 한·아세안FTA의 긍정적인 효과로 수출량이 증가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주요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며, 포스코 해외지사도 수출량이 많다. 농림수산물 중 가공식품류 또한 상위 10개 품목 안에 들어가 있다.

〈표 3-5〉 전라남도의 對 아세안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

년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4,802	-46.2	1,478	-37.9
2014년	8,918	-8.9	2,381	-9.2
2013년	9,787	21.6	2,622	-4.1
2012년	8,046	18.3	2,735	4.0
2011년	6,804	56.3	2,630	33.5
2010년	4,353	28.1	1,970	38.6
2009년	3,398	-18.7	1,422	-41.1
2008년	4,181	44.0	2,415	8.5
2007년	2,903	32.1	2,225	-3.8
2006년	2,197	2.9	2,313	15.5
2005년	2,135	27.2	2,002	11.0
2004년	1,678	65.6	1,805	4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데이터(www.stat.kita.net)

4. 對 유럽(EU) 교역동향

한·EU 2011년에 발효되었으며, 28개 국가를 상대로 한 두 번째 거대 경제권과의 FTA체결이다. 28개 국가로의 시장진출 확대 및 수입선의 다변화와 외국인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제고할 것이라 보았다.⁹⁾ 교역동향을 살펴 보면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2010년도의 경우 FTA발효시기와 맞춰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섬유류이며 농림수산물 또한 주요 수출품목 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수산물 중 해조류와 농산가공식품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6〉 전라남도의 對 유럽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

년월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3,501	2.7	4,453	-32.1
2014년	3,409	10.6	6,554	28.3
2013년	3,082	-2.0	5,110	-5.8
2012년	3,145	3.4	5,426	56.3
2011년	3,042	4.0	3,472	5.0
2010년	2,924	85.1	3,306	51.1
2009년	1,580	-25.0	2,188	2.9
2008년	2,108	16.9	2,127	-0.8
2007년	1,802	14.9	2,143	43.0
2006년	1,568	63.8	1,498	2.3
2005년	958	5.1	1,464	38.1
2004년	911	27.5	1,061	40.8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데이터(www.stat.kita.net)

9) 산업통상자원부 (2015), www.fta.go.kr

5. 對 미국 교역동향

2012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한·미FTA발효로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외국인 직접투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였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제도를 갖춘 국가로서,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개선·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¹⁰⁾ FTA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들(전기전자, 기계, 고무, 농수산물식품)¹¹⁾의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 전자기기 등이며, 수산물과 농산물 또한 주요 수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중 조미 김 등 해조류의 수출비율이 가장 높으며, 농산가공품과 수산가공품 비중이 높다.

〈표 3-7〉 전라남도의 對 미국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

년월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5년	1,634	-26.7	746	-20.3
2014년	2,231	14.6	935	33.2
2013년	1,947	-16.9	702	-41.3
2012년	2,344	12.6	1,196	-27.6
2011년	2,082	4.8	1,652	27.8
2010년	1,987	114.4	1,292	61.7
2009년	927	-39.0	799	-46.9
2008년	1,520	-1.8	1,505	11.7
2007년	1,547	9.7	1,347	45.7
2006년	1,410	10.3	924	-24.3
2005년	1,279	36.4	1,221	-5.4
2004년	938	102.0	1,291	54.5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데이터(.www.stat.kita.net)

10) 산업통상자원부 (2015), www.fta.go.kr

11) 산업통상자원부 (2016), “한·미FTA 4년의 성과”, 경제다반사 블로그

제3절 중소기업의 FTA활용현황 분석

FTA체결은 10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의 활용도 측정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각 지역별 활용도 분석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전라남도 또한 그 자료가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으므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FTA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총 178개 업체가 FTA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컨설팅 결과자료를 참고하여 전라남도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FTA활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컨설팅 참여 기업의 선정은 기업의 사업참여 희망 및 지역세관의 수출기업 컨설팅 지원 요청,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FTA미활용기업 리스트를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직접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출기업 및 수출유망기업을 대상으로 FTA홍보 및 교육의 목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수출협력사 또한 컨설팅의 대상으로서 사업에 참여하였다.

FTA센터의 컨설팅 결과자료의 경우 산업부의 지침에 맞춰 작성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의 주요 업종을 수산가공식품, 철강, 전기전자, 고무화학,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전체 FTA들 중 전라남도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FTA협정별로 분류하였으며, 실질적인 FTA활용도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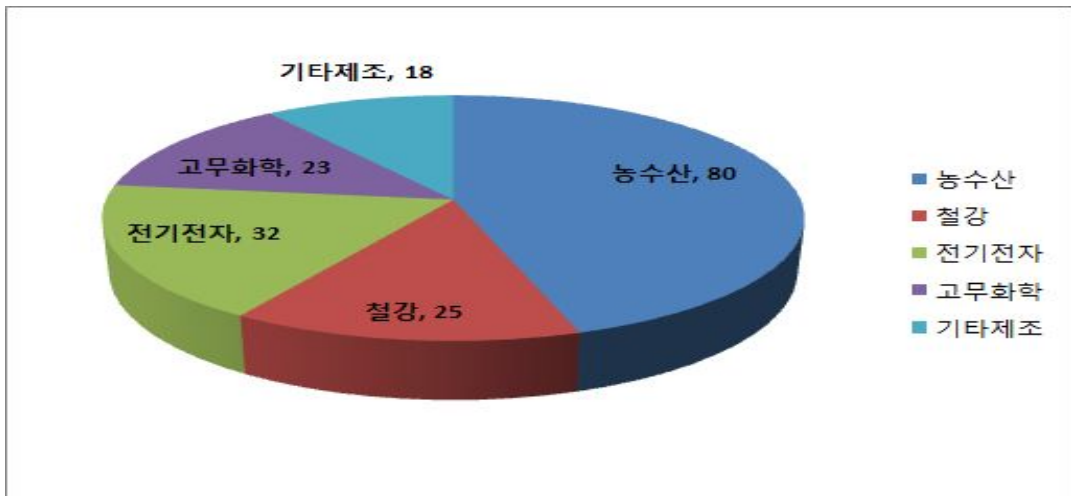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음과 중간,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여러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경영자의 관심도가 FTA활용의지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왔다. FTA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컨설팅 참여 업체들의 업종을 크게 농수산가공식품, 철강, 전기전자, 고무화학,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업종별 참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해당되는 FTA협정 및 FTA활용도, 기업의 FTA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그리고 FTA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업종분포 및 FTA협정 활용현황 분석

먼저 FTA컨설팅 참여기업들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컨설팅 참여 중소기업의 수는 총 178개 업체이며, 농수산물과 관련된 업체가 8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전기전자가 32개사, 철강관련이 25개사, 고무화학이 23개사, 기타 생활제품 등 제조업이 18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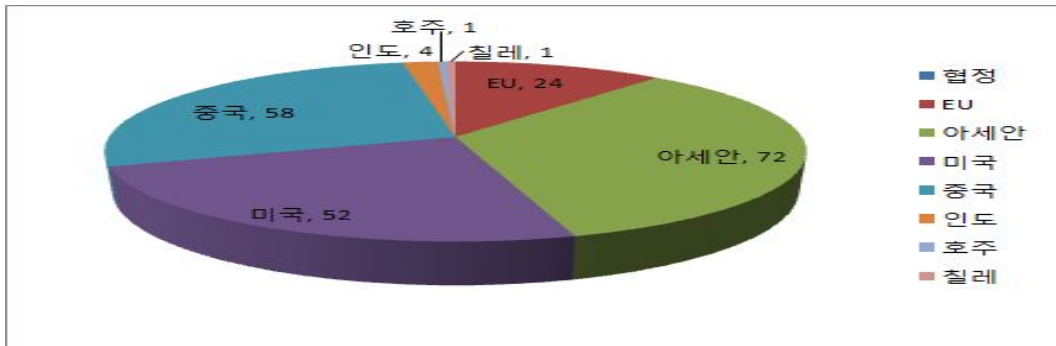
<그림 3-1> FTA컨설팅 참여업체 업종별 현황



자료 : 전라남도FTA센터 현장방문 컨설팅 자료

전라남도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업종을 살펴보면 철강 및 화학 대기업의 협력사와 자동차부품업체, 그리고 농수산물가공식품 업종이 주를 이룸을 알 수 있다. 주로 수출보다는 간접수출을 통한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해당FTA협정별 현황을 파악해보면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해당 FTA협정 결과를 살펴보면, 한·아세안FTA가 7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중국 58건, 미국 52건, EU 24건, 인도가 4건, 그리고 호주가 1건, 칠레가 1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거대경제권과의 수출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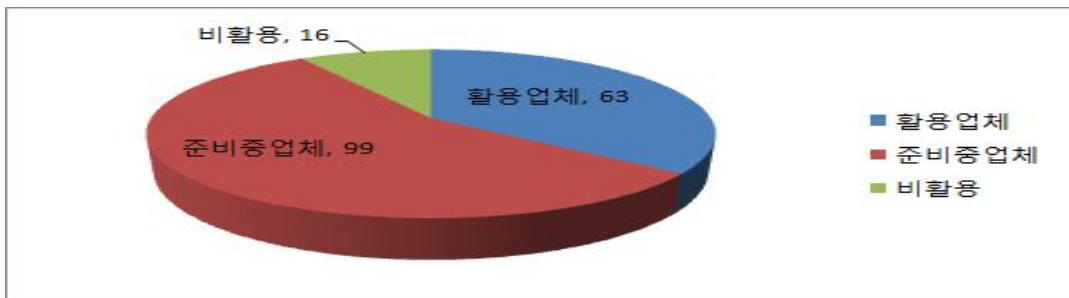
<그림 3-2> 해당되는 FTA협정(복수응답)



자료 : 전라남도FTA센터 현장방문 컨설팅 자료

해당업체들 중 협력사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실제 수출입시 FTA를 활용중인 업체와 준비 중인 업체, 비활용 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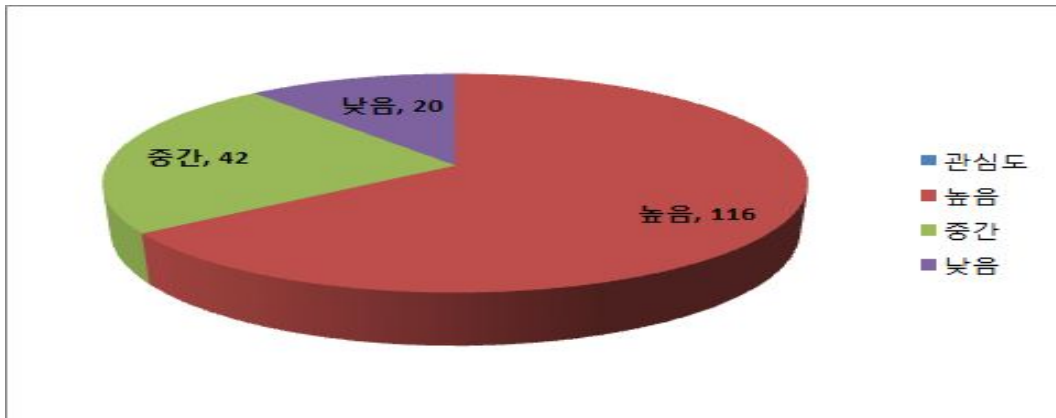
<그림 3-3> FTA활용 현황



자료 : 전라남도FTA센터 현장방문 컨설팅 자료

전체 178개 업체들 중 실제로 FTA활용 기업 수는 63개였으며, FTA활용을 준비하는 기업 수는 99개였다. 그리고 FTA활용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16개였다. 준비를 고려하는 업체들의 경우 대다수가 중국과 관련된 업체들이었으며, 한·중 FTA가 발효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활용도를 측정하기엔 애로 사항이 따랐다.

<그림 3-5> FTA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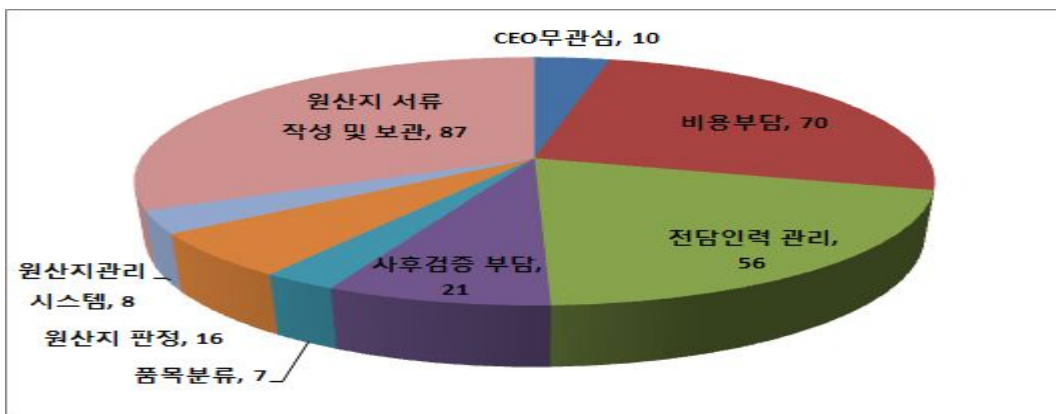


자료 : 전라남도FTA센터 현장방문 컨설팅 자료

3. FTA활용 관련 애로사항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FTA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림 3-6> FTA활용 애로사항(복수응답)



자료 : 전라남도FTA센터 현장방문 컨설팅 자료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산지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이 87건, 비용부담이 70건, 전담인력 관리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56건순으로 제일 많았다.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난 이유는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간접수출 형태의 업체로, 제조업자의 FTA활용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출자가 FTA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내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들을 수취해야 한다. 그러나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제조만 하는 업체의 경우 그 관심도는 매우 낮으며, 또한 HS코드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FTA관련 용어에 대한 어려움과 직접적인 FTA혜택이 없으므로 서류작성의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 또한 원산지확인서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기업을 협력사로 둔 업체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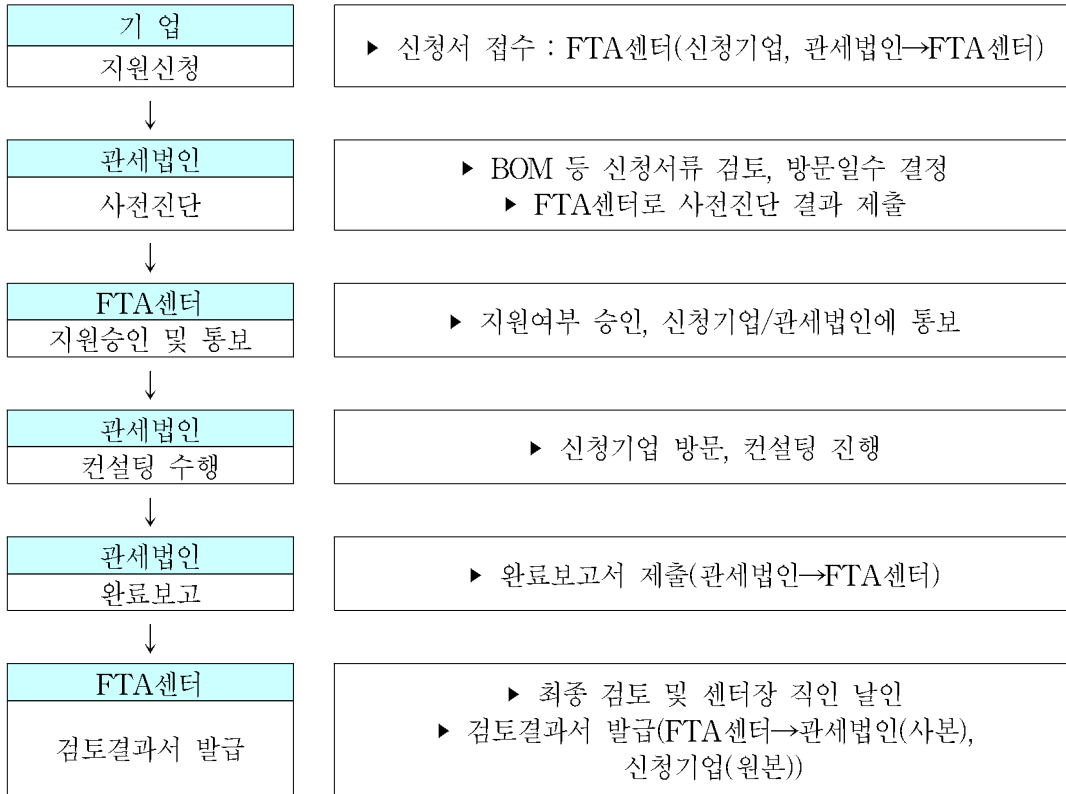
그 다음은 비용부담으로, FTA활용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과 연계하여 많은 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결국은 전담인력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으며, 주로 대표가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많다. 또한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 아직 낮으며, 잦은 퇴직 및 이직 등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 사후검증 부담과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은 몇몇 중소기업에서만 나타났으며, 대다수는 서류작업과 전담인력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4. FTA활용 현황분석 시사

FTA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산지 서류 작성 및 보관에 대한 것이었다.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 혼자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 및 수입업자 등 이해당사자 전부가 노력해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증빙서류로는 원산지확인서가 있다. 원산지확인서 구비를 위해 국가에서는 따로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¹²⁾을 시행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여 원산지 서류 작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기업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해결할 수 있다.

12)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과 정합성(整合性) 검토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시행, 협력사의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기업과 협력사간 신뢰 제고를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표 3-8〉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프로세스



자료 : 전남FTA활용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비용부담에 관한 것이었다. 비용부담은 곧 세 번째로 많은 전문인력 부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 따로 인원을 채용하고 싶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FTA활용을 통해 수익창출을 내기에는 아직 그 규모가 매우 협소한 경우가 많다. FTA를 활용하고 있어, 그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이라면 몰라도 FTA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 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여건 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고용부에서 FTA전문 자격증인 “원산지관리사”자격자를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시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연간 최대 1,080만원을 고용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에서는 원산지업무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진행하는 수출입 업무를 병행하면서 원산지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금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애로사항들은 FTA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었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은 모두 FTA지원사업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었다.

제4장 FTA활용 사례분석과 활성화 정책제언

전라남도의 경우 농수산물 집중 지역에 대한 인식으로 FTA약소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대기업들이 전체 수출입의 90%이상 차지하지만, 중소기업 또한 수출 및 수입시 FTA활용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중FTA발효 이후 중국과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발효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12,000건이 넘었다(서울세관, 2016). 지역 내 기업들의 FTA활용현황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의 FTA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을 진행 시 나온 대표적인 사례들로 FTA활용의 주요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 중소기업이 가진 FTA활용의 주요 애로사항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내용과 향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FTA활용 사례 분석

1. 수출업체 협력사의 FTA활용 사례

대기업 협력사를 비롯하여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들 또한 FTA활용과 무관할 수 없다. 중소기업들 및 영세기업, 농어업인의 경우 자사와 FTA활용이 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FTA활용절차를 따져보면 수출입업체와 연관이 있는 모든 제조업체 및 원재료 납품업체들은 전부 FTA활용의 당사자(제조업자)에 해당된다.

협력사로서의 원산지관리는 중소기업의 FTA활용에서 가장 많은 사례이며, FTA활용의 시작이자 기본이라 볼 수 있다. 전라남도 또한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이 많으며, 수출 중소기업의 협력사인 곳도 많이 있다. 협력기업들의 경우 수출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생각하여 FTA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이러한 문제로 수출기업에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 서류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장성에 위치한 N사의 예를 들고자 한다. N사의 경우 백색가전 생

산 시 투입되는 고무팩킹 제품을 만들어 대기업 및 완제품 업체한테 납품하는 생산업체이다. 간접수출의 형태로 수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규모와 매출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제품을 납품받는 곳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 확인서¹³⁾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였다. 상공회의소의 안내를 받아 FTA활용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을 신청하였으며, FTA관련 기본 교육을 받았다. 직접수출이 아닌 제조업체의 FTA활용이었으므로 원산지증빙자료의 구비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 후 제공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고무팩킹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투입요소들의 원재료관리와 함께 소요부품내역서(BOM : Bill Of Material)작성을 도움 받았다. 원산지증빙자료의 구비가 완료된 후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여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업체한테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내 협력사의 FTA활용사례는 가장 빈번하고, 애로사항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대개 협력사들에게 원산지증빙자료, 특히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인지도만 각인시키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또한, 지원사업으로 충분히 기업들은 증빙자료 수취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다.

<표 4-1> N사의 사례 분석

FTA활용 사항	애로사항	해결방안	지원사업
- 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공	- 제조업체의 FTA활용 인식 저조 및 작성에 대한 애로	- FTA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 활용 및 교육 진행	- FTA컨설팅 - 제 3자 확인 컨설팅

자료 :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자료

13)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 확인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관세법의 특례 규칙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때 관세청 FTA 포털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

2.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 활용 사례

FTA활용의 시작은 명확한 HS코드 분류로부터 시작된다. 명확한 HS코드 분류는 대외무역에서도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되어 상품분류의 통일성을 기하여 국제무역의 원활화 및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였지만, FTA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출제품이 어느 HS코드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FTA협정에서 정한 양허대상인지, 아닌지 분별되며 원산지결정기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HS코드를 잘못 분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부정발급에 해당된다. 자유무역특례법 제22조에는 벌칙조항 중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고의적이 아니고, 단순착오 등 실수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발생시킨 수출자도 형사 처벌을 하도록 매우 엄격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명확한 HS코드의 분류는 FTA활용의 시작이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지원으로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진행 중인 “품목분류사전심사”¹⁴⁾제도가 있다. HS코드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원제도이며, 다양한 분야의 품목들을 전부 지원한다. 품목분류결정사례의 경우 2014년도에만 총 4,944건이었다(관세평가분류원, 2014).

전라남도 기업의 HS분류를 통한 FTA활용 사례를 보고자 한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경우 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매우 많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식품 분류에 분류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생소한 재료를 투입하여 만든 발효액이나 기타 첨가물을 넣어 만든 특수한 식품 등 기존의 HS분류에 없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아, 수출 시 HS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많다.

장흥에 있는 S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S사는 부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술씨”라는 제품을 만들었다. 곡물류를 건조하여 제조한 것으로, 이 제품을 물에 타서 약 1주일 발효시키면 술이 되는 제품이었다. 형태는 곡물건조제품이지만, 주

14) 품목분류사전심사 : 수출입신고 전, 수출입업자 스스로 HS코드 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 86조 관세법시행령 제 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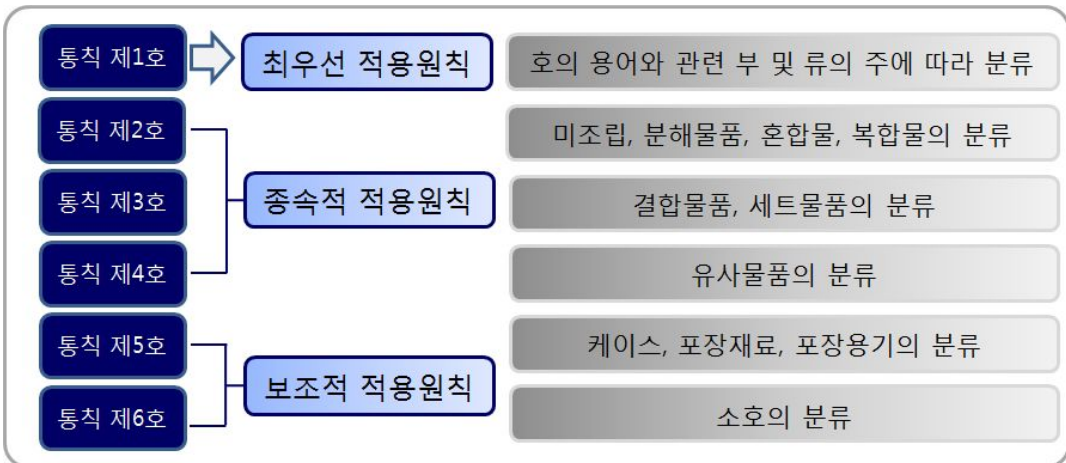
목적은 술로 분류되어 HS분류에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및 유럽과 술의 통관이 어려운 아랍지역의 바이어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중이었으며, 먼저 미국으로 첫 수출을 계획 중이었다. 미국의 바이어는 또한 FTA를 활용한 수입을 희망하였다. S사의 제품은 매우 생소한 것이었으며, 수출품목에 대한 HS품목분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HS품목분류 및 미국측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FTA활용에 대한 도움을 청하고자 FTA활용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신청하였으며, FTA컨설턴트는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안내하였다. HS품목분류는 각 개인별로 분류에 차이가 있어 공신력을 가진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다. 품목분류의 경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닌 품목분류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인 품목분류 통칙에 따라 분류하지만, 그 해석 또한 개인차가 있다.

<표 4-2> 통칙의 명칭

구분	명칭	구성	비고
HS 품목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 제6호	협약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GIRs)		

자료 :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품목분류 교육용 자료

<그림 4-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자료 :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품목분류 교육용 자료

한 달의 시간이 지난결과 심사결과를 회신 받았으며, “술씨”제품의 경우 곡물을 팽창시켜 분쇄한 쌀 약 85%에 누룩 14.4%, 효모, 스테비아 등을 혼합하여 수지제백에 소매 포장한 것이었으므로,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1904.10호로 분류를 받았다. 1904.10호에 분류되는 품목의 경우 한·미FTA 양허대상 품목으로 무관세 적용 품목이었다. 공신력을 가진 기관으로부터의 명확한 HS분류를 통해 원산지결정기준과 협정관세율을 파악한 후, 한·미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술씨”제품을 미국으로 첫 수출을 성공할 수 있었다.

HS코드 분류는 전문가인 관세사들도 분류가 모호한 품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가 생겼으며, 관세청의 분류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명확한 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

<표 4-4> S사의 사례 분석

FTA활용 사항	애로사항	해결방안	지원사업
-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HS품목분류	- HS분류의 어려움	- 국가 지원사업을 활용, 명확한 HS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자료 :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자료

3. 인증수출자제도 활용 사례

FTA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 부분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FTA상에서 말하는 인증수출자 제도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정한 것이다(이하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¹⁵⁾ 한·아세안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류제출 간소화의 혜택이 있다.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의 지정은 매우 중요하다. EU의 경우 원산지신고문안을 수출자가 자유롭게 무역서류에 추가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다. 원산지증명서 대신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수출관련 서류에 작성하여 FTA활용이 쉽게 가능하지만, 6,000유로(한화 약 750만원) 이상 수출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그 문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 건에 대해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것은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과 같다.

<표 4-5>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구분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자료 : FTA교육 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

전라남도 기업의 사례로 고흥에 있는 K사의 사례를 보고자 한다. K사의 경우 고흥에 위치한 농수산물가공식품 중심의 수출기업이며, 기존에는 타 업체의 가공식품 등을 도매형태로 아세안 및 미국지역으로 수출을 진행하였었다. 자사에서 직접 알로에를 이용한 음료를 개발, 새로운 형태로 폴란드로 직접수출을 준비 중이었다. 폴란드의 바이어는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였다. 폴란드의 경우 한·EU FTA에 해당되었다. EU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의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¹⁶⁾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K사의 경우 인증수출자의 지정이 필수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한 바이어 측에서도 FTA협정관세 적용을 희

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6) 원산지신고문안 : 한·EU 협정문에 의거,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으며, 원산지신고문안을 상업송장 등 수출서류에 작성하여 활용한다.

망하였다. 수출품목인 알로에음료의 경우 HS코드¹⁷⁾는 2202.90에 해당되었으며, EU에서 기본 관세율은 5.4%의 기본관세와 100kg당 21.2유로의 중량관세가 적용되지만, FTA협정관세의 경우 0%로 무관세가 적용되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금액절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수취가 매우 중요하였다.

K사는 FTA활용을 위해 통관 관세법인에 인증수출자 지정과 관련된 준비사항 및 컨설팅을 알아본 결과, 약 2~3백만원의 비용지출이 예상되었다. 중소기업인 K사에게는 수출 전부터 3백만원 수준의 비용지출은 매우 큰 부담이었다. K사 대표는 FTA업무를 담당할 내부직원을 따로 지정하여, 국가 지원사업 참여 등 방법을 찾아 직접 인증수출자 지정 및 FTA원산지관리 업무를 진행토록 조치하였다. 담당직원은 FTA원산지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으며, 인증수출자 신청 등 절차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하면서 FTA활용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원사업 중 FTA활용지원센터의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을 알게 되었으며, FTA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1차 컨설팅에서 FTA에 대한 기본이론 및 실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FTA활용에서 요구되는 원산지증빙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원산지증빙에는 원재료구성내역부터 각 원재료의 가격비 및 투입비중 등 포괄적인 정보가 필요하였으므로, 여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서류를 구비하였으며, 각 협력사 및 거래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수취하였다. 역내 원재료를 협력사로부터 구매했을 경우 각 협력사별로 국내용 원산지증빙 서류인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해야 하는데, 각 거래처에서 작성해서 제공해야 했다. 이 부분에서 규모가 있으면서 FTA서류 작성을 해본 업체들로부터는 서류수취에 문제가 없었으나, 영세한 거래처들로부터 서류 수취에 힘이 들었다. 영세한 거래처 또한 FTA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을 진행하여 FTA활용의 필요성 등을 교육하였다. FTA활용의 장점 및 필요성과 원산지확인서 작성의 중요성 등을 인지시켜 서류를 수취할 수 있었다.

제품의 원재료 리스트를 보면서 FTA활용을 위해 요구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던 중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다. 알로에음료(HS 2202.90)의 경우

17) HS CODE :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이다. HS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품목분류제도로서, 품목분류 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

원산지결정기준은 CTH¹⁸⁾(HS코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였으며, 예외 조항 중 1302.19에 해당되는 모든 사용재료는 영내 생산품을 활용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K사의 경우 알로에 겔(1302.19에 해당되는 재료)을 태국에서 수입하여 제조하였으므로, 영내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FTA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과거 관세청의 사례에서 알로에 파우더에 비타민 등 기타 혼합물을 투입하여 제조하면, 기타 제품으로 HS 2106.90에 분류되어 세번변경기준에 적합시킨 사례를 보았다.

원산지결정기준 적합을 해결한 후 지속적으로 FTA활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서류검토 및 수정을 지원받았으며, 관세청의 신청절차에 따라 품목별인증수출자인정을 받았다. 폴란드로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여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수출시 활용했던 마케팅 노하우와 FTA활용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공격적으로 진출 전략을 진행 중이다.

<표 4-6> K사의 사례 분석

FTA활용 사항	애로사항	해결방안	지원사업
- 인증수출자제도	- FTA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부재 및 금전적 부담	- FTA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을 활용한 교육	- FTA컨설팅

자료 :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자료

4. FTA사후검증 대응 사례

기업들이 FTA활용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원산지사후검증¹⁹⁾(이하 “사후검증”) 때문이다.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와 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등의 목적으로 원산지검증을 시행한다.

18) CTH(Change Tariff Heading) :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4단위 변경 기준

19) 원산지사후검증 : 원산지의 역내산 정확성에 대한 관세당국의 검증을 의미한다. 국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원산지증명서류 발급기관, 계약상대국 수출자, 물품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검증/조사하는 것을 의미.

FTA 당사자 간에는 서로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서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FTA 양 당사자끼리의 거래에서만 특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사후검증을 시행한다.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방법 및 그 조치들은 각 FTA 협정문과 국내 시행법에서 정하고 있다. 사후검증의 경우 간접검증과 직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지 조사의 주체가 수입국세관이 되는 경우 “직접검증”이며, 수출국세관인 경우 “간접검증”이다.

직접검증 방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국 수입자 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대표적으로 한·미 FTA가 해당된다. 간접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충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한·EU FTA, 한·터키FTA에서 채택하고 있다.

<표 4-7> 주요 협정별 FTA사후검증 상세절차 1

직접검증(한·미 FTA)	간접검증(한·EU FTA)
(검증 개시) ① CBP Form 282)을 통해 생산 관련 주요 자료 요청 ② 수입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미세관에 제출(제출시기 연장가능)	(검증 개시) ① EU 관세당국은 우리 관세당국에게 검증 의뢰 ② 우리 관세당국은 7일전 서면조사 사실을 수출자에게 통지하고 “표준질의서”를 통해 원산지소명 자료 요청 ③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자료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기한 30일 연장 신청가능(1회)
(검증결과 통보) ① 미 관세당국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면 결과를 통보하고 검증 종료 ② 소명이 충분치 못하면 예비 결정 또는 최종결정(Has been taken)을 내리고 피검증자에게 CBP Form 29(Notice of Action, 결과통지서)로 결과 통보	(검증결과 통보) ① 우리 관세당국은 조사종료 3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② 수출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우리 관세당국은 EU 관세당국에게 검증결과 통보 * 검증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조사결과를 회신해야 함

자료 : 박지은, “FTA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트레이드포커스 2016년 제 9호, 한국무역협회, 2016, pp.11.

<표 4-8> 주요 협정별 FTA사후검증 상세절차 2

(혼합 검증) 한·아세안 FTA	(혼합 검증) 한·중국 FTA
<p>-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이지만 수출국에서 시행한 검증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직접검증 방법 채택</p> <p>(간접검증)</p> <p>① 수입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을 받으면 수출국 관세당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2개월 내 결과를 조사 대상자 및 수입 관세당국에 통보 ② 수입국은 수출국의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수출국에 결과를 통보 ③ 6개월 이내에 검증 완료되어야 함</p>	<p>-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 검증, 수출국 관세당국을 대상으로 간접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문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p> <p>(간접검증)</p> <p>① 수입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을 받으면 수출국 관세당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6개월 내 결과를 수입 관세당국에 통보 ② 수입국은 검증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 판정 결과를 수출 관세당국에 통보</p>
<p>(직접검증-방문조사)</p> <p>① 수입국 관세당국은 현지조사에 앞서 방문예정일, 조사범위 등의 내용을 서면 통보해야 함(통보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기 신청 가능) ②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당사국 합의기간 내에 현지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6개월 이내 검증 결과를 수출자와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함</p>	<p>(직접검증-방문조사)</p> <p>① 수입국이 수출국에 방문검증을 실시할 경우 검증 30일 이내에 수출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② 직접 방문 검증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함</p>

자료 : 박지은, “FTA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트레이드포커스 2016년 제 9호, 한국무역협회, 2016, pp.11.

보편적으로 수입업자의 요구 및 관세절감의 목적으로 FTA를 활용하였지만, 세관으로부터 검증의 불안과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협정관세 적용 배제 등 위험은 중소기업에게 FTA활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세청과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사후검증의 주요 이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9> 주요 협정들의 FTA사후검증 유형

FTA	검증유형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검증 요청 다수 - 수출규모가 큰 대·중견기업의 검증 비율이 높음 - 무작위(random) 검증 요청 다수 - 인증수출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원산지신고문안 상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다거나,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검증의 대상이 됨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영세 기업 또한 검증의 대상 - 섬유·의류 품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함 - 반덤핑 이슈
아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 오류 시에 FTA 특혜세율이 배제되는 경향이 높음 (예 :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행 시 '소급발행'을 미기재)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의 보도자료 분석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정이 완료되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 사후검증 또한 늘어가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후검증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원산지증명서(C/O) 건별 22건에 불과하던 수출에 대한 사후검증이 한·UFTA 발효(2011년7월) 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2,886건으로 2008년대비 큰 수치로 증가하였다.

<표 4-10> FTA사후검증 동향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업체기준	7	7	6	84	222	291	293
C/O기준	23	41	22	122	515	2,512	2,886

자료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6

사후검증의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섬유검증 사례를 볼 수 있다. 보성에 소재한 B사의 경우 장갑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이다. 미국, EU, 아세안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을 진행하였으며, 미국으로 수출할 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입업자로부터 미국 세관으로부터 "CBP FORM 28"²⁰⁾을 받았다는 연락을 들었다. 기존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명확성을 보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들을 요청받았다. 이는 사후검증 대상에 지정되었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접검증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간접검증으로 진행하므로 수출업자인 B사에서 원산지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경우 수출자나 수입자가 자유롭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므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면서 FTA활용은 하고 있었지만, 그 증빙자료의 구비는 미비한 상태였다. B사가 만약 증빙자료 제출이 미비되면 그동안 받았던 협정관세가 배제되면서 많게는 10억원 가량 관세를 내야할 수 있었다. B사는 급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며, FTA센터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컨설팅 결과 B사의 경우 원산지증빙자료 구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미국의 경우 면직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지만, 원사부터 역내산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yarn forward²¹⁾ 조건이 있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매우 까다로웠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원재료의 거래내역 등 기본 원재료 출납관련 서류만 있고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등 FTA관련 증빙서류는 구비가 안 된 상태였다. FTA컨설팅트의 도움을 받아 미국세관의 검증 요청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였다. 기본적인 원재료의 재고관리부터 직접 생산을 증빙하는 공장등록증 및 제조공정도, FTA상 요구되는 협력사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사실 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에 따른 발급대장과 서명등록, 업체 홍보용 리플렛 및 수출신고필증 등 기본적인 무역서류 등을 원산지검증 매뉴얼에 맞춰 준비하여 대응하였다.

증빙자료들은 한국어와 영문번역 둘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미국세관의 사후검증 대응에 성공하였다. B사는 검증이 들어온 후 막연히 진행하던 FTA활

20) CBP FORM 28 : 미국세관에서 원산지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수입자 또는 수출자/생산자에게 발송하는 서류.

21) yarn forward : 원사기준 원산지규정이며, 의류와 직물 등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방식 중 하나. 섬유완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초원자재인 원사(실)의 생산지를 역내산(제품의 국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

용에 부담을 가졌었지만, 원산지증빙자료의 구비 중요성과 방법을 알게된 후 FTA활용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B사는 현재 원산지증빙자료의 구비를 철저히 한 후 수출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를 잘 활용 중이다.

<표 4-11> B사의 사례 분석

FTA활용 사항	애로사항	해결방안	지원사업
- 사후검증 방어	- 사후검증에 대한 업체의 부담	- FTA전문가 현장 방문 컨설팅	- FTA컨설팅

자료 :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자료

제2절 분석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의 시사점

중소기업의 FTA활용과 관련하여 크게 4개로 나누어 제조업체의 FTA활용과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한 HS분류, 인증수출자를 활용한 수출전략, 원산지 사후검증의 대응 사례를 보았다. 위의 성공사례에서 보듯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FTA를 활용하기 전까지 자사와 무관하거나 어렵고 귀찮게 생각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FTA 원산지관리 업무를 업무과다로 인식하여 FTA 활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컨설팅 활용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증수출자 지정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성공사례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다양한 FTA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FTA원산지관리에 대한 업무과다 부담으로 인한 잦은 원산지관리자 전담자의 변경도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자가 따로 없이, 해외영업 또는 수출입업무, 자재관리 담당자가 주로 중복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FTA이해도가 대체로 낮다. 또한 회계부서의 협조 또한 잘 안되어 FTA활용에 애로사항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원산지관리자의 잦은 변경은 점차 늘어나는 FTA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대비에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회사 전체의 차원에서 공동적인 원산지관리에 대한 이해도 증가 및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자 혼자에게만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1번만 원산지관리 방식을 교육받고 구축한다면, 추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업무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무료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원산지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까지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FTA활용은 수입업자 혹은 수출협력사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FTA활용을 통한 매출증대가 아닌 매출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활용을 진행하므로, 기업 담당자의 관심도는 낮고 부담은 높다. 또한 제 2절의 FTA관련 애로사항 현황에서도 나

타났듯이 소규모기업이 많다. 대표가 직접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와 직원들 또한 소수인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FTA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담인력(전문인력)의 부재, 원산지 서류 및 작성의 부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법인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왔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영세성과 지리적·시간적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고의 지원 방안은 직접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각 지역 센터의 FTA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주된 애로사항은 FTA컨설팅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며, FTA컨설팅에서 컨설팅의 수행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FTA원산지관리라는 것이 단순한 기업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전자기기부품 업체나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는 1차적인 컨설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 한계는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FTA컨설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윤영호, 2015).

<표 4-12> FTA컨설팅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초점

연구자	연구의 초점	비고
김희열, 곽근재 (2014)	-현재 FTA컨설팅의 범위가 주로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활동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FTA컨설팅의 범위를 나누어, 기업무역의 가치사슬 단계별 각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기술적 연구
김진섭, 김중근 (2013)	-FTA컨설팅의 컨설팅 범위 지정, 컨설팅단가 책정기준 제시 -컨설팅의 수입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현재는 낮음)	기술적 연구
조준영, 원동환 (2012)	-FTA활용상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 FTA컨설팅의 방향 및 컨설팅의 역할 제시 -FTA컨설팅을 역할별로 분류하여 각자의 방향 제시	기술적 연구
정재완 (2013)	-FTA활용 단계별 전문컨설팅트와 직무 제시 -원산지검증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원산지심사 전문가의 양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기술적 연구

자료 : 윤영호, “FTA컨설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15

“수요자 중심의 FTA활용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FTA활용에 더 높은 의지를 줄 수 있으며,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은 애로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는 대부분이 한꺼번에 많은 대상에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FTA활용과 관련된 원산지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FTA에 대한 교육을 일과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업종별·산업 협회별 CEO들 모임 같은 소모임에서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한다면 좀 더 높은 효율과 관심도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EO들의 선택과 집중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CEO들의 편의시간을 맞춘 이러한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배명렬, 2014). 그리고 FTA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은 수출기업의 여건을 고려하고 수출기업들이 FTA 원산지 지식의 학습과 실무지식의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FTA 활용촉진 수단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등이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FTA지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김용태, 2014).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원산지관리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동시다발적이고 빠르게 여러FTA의 발효로 인하여 FTA 협정들 간의 원산지결정기준 차이가 많을수록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산의 비효율성, 차별적인 관세율조치, 다양한 지역예외 적용과 통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협정체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손판도, 2015).

결국 활용하는 FTA 협정이 많음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상이한 원산지 요구사항의 관리 및 적용, 증명 및 협정별로 상이한 검증으로 인한 업무의 복잡성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정관세 혜택을 본 품목들의 적합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요구하는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존재한다. 먼저 개인(수출업자)이 FTA협정국으로 수출하기 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비용 및 준비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세관당국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의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원산지증빙자료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사후검증 발생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시, 특혜관세 혜택을 배제 당하고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더 추징 당하게 된다. 복잡한 규정으로 인하여 FTA효과가 감소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 특히 중소수출업계의 FTA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기업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원산지 정보관리란, 수출입 품목의 원산지(FTA상 요구되는)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최종 수출업체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하므로 그에 따른 협력사로부터의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기업은 다양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잡한 원산지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사후검증을 대비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FTA협정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원산지 증명을 위한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데, 기업은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사후검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도 전부 국가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부담을 가지지 않고 활용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구비가 가능하다.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적으로 업무를 맡을 담당자의 지정이나, 국가 지원을 받아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의 전반적인 원산지정보관리가 요구된다.

2. 중소기업의 FTA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전라남도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전라남도 중소기업들의 FTA활용사례 분석과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제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및 FTA 관련 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가진 FTA활용, 원산지 관리 등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FTA교육·컨설팅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FTA무역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등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별 지원사업들의 경우 교육 및 설명회 등 중복이 많으며, 지원기관 간 수혜기업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여러 기관에서 동일기업에게 중복지원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들의 FTA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여에 대한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FTA 현장방문 컨설팅의 경우도 다양하지만, 컨설턴트의 실력미비 혹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공급자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이재철, 2014)

다양한 기관에서 FTA지원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들이 아직도 FTA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입수가 불가능한 것은 정보제공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배명렬, 2014). 우선적인 FTA활용지원과 관련된 정보제공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각 기관별로 시행 중인 홍보방법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별 사이트 등 인터넷으로 산발되어 제공되는 정보들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각 업종별·산업별협회 사이트 등에도 잘 연동되어 있지만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각 기관별로 자기들만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자기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FTA활용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보제공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원 기관들은 FTA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FTA컨설팅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컨설턴트들의 컨설팅 지원성과를 관리하고 참여기업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등 피드백을 받고 있다. FTA컨설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맞춤형 지원강화에 좀 더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좀 더 반영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친숙한 상황에서의 FTA활용성공 비즈니스모델 사례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한다면, 중소기업들의 FTA활용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참여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방지로 기업들의 활용성과 측정과 컨설팅 활용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고,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고, 컨설팅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또한 전라남도지역의 현황에 맞춰, FTA 활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방안들은 점차 수요자 지향적, 수출 지향적, 실무 지향적, 현장 지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원산지 컨설팅 위주에서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해외마케팅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5장 결 론

본 논문은 전라남도지역의 중소기업들의 FTA활용사례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각 기관별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FTA 활용도와 전라남도의 수출입동향 및 FTA활용 현황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대표적인 사례들의 분석으로 기업의 FTA활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라남도지역은 철강 및 석유화학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들과 농수산물 식품 가공업종이 중소기업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주요산업들은 FTA 발효 국가와 교역이 많아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여건은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FTA란 단어부터 활용까지 그 인식이 저조하고, 동시다발적인 FTA발효 효과로 한국의 경제영토는 넓어졌지만, 이를 활용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각 협정별 상이한 규정이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FTA활용현황 분석 및 컨설팅·인터뷰를 통한 사례분석 결과,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FTA활용도가 저조한 이유는 낮은 FTA활용 정보습득 및 접근성의 문제로 인하여 저조한 인식이 주 원인이었다.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크게 영세한 규모에 따른 전담인력 부재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와 원산지 관리 업무로 볼 수 있었다.

인력문제에는 지역 내 전문인력 및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존 직원의 원산지관리 담당겸직에 따른 업무과다, 최고경영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활용의지 저하, 원산지 담당자의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원산지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FTA관련제도 활용의 미흡과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검증대비 자료 등에 대한 작성과 협력업체로부터의 수취, 보관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중소기업의 FTA활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 사업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상대국가에서 수출보조 활동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다양한 민·관 기관들이 나서서 FTA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지원사업들의 대부분

분은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기관에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이력을 지원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부가적인 지원사업들을 여러 기관에서 각자 전문분야별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도 끊임없이 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FTA활용의 자립도를 키워야 한다. 지원기관과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점차 개선해 간다면 전라남도 중소기업들의 FTA활용도는 증진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 문헌들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유관기관들의 보도자료와 각 기관들의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고, 전라남도FTA활용지원센터의 컨설팅 및 기업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FTA활용사례 분석에 집중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전라남도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좀 더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분석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한 결과로 FTA활용 현황 및 분석과 이를 통한 좀 더 양질의 지원방안 마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다현 (2013), “수출중소기업의 시장환경, 수출능력, FTA활용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TA 컨설팅 활성화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호 (2016), “FTA 컨설팅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실증적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섭, 김중근 (2013), “관세사의 FTA컨설팅업무 활성화 방안”, 관세학회지 14권 2호, pp. 3-22.
- 김창범 (2013), “한·중 FTA와 전남의 대중국 농수산업 무역경쟁력 - 비교우위와 산업내무역”, 통상정보연구 15권 3호, pp. 333-352.
- 김태인, 이준건 (2014),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16권 3호, pp. 225-251.
- 김희열, 박근재 (2014), “중소기업의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 방안”, 관세학회지 15권 4호, pp. 143-161.
- 김용태 (2014), “한국 중소기업의 FTA활용도 및 성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명렬, 박천일 (2014), “한국무역업계의 FTA 평가와 활용 제고방안 연구”, 통상정보연구 16권 5호, pp. 249-273.
- 박윤철 (2015) “부산기업 FTA활용도 증진방안”,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판도, 정성엽 (2015), “FTA 관세혜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의 원산지정보 관리 전략”, 산업경제연구 28권 2호, pp. 703-721.
- 심재권 (2013), “FTA 활용역량이 국내 중소 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한국과 아세안FTA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석 (2013), “FTA활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 인천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호, 나도성 (2011),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 pp. 143-173.
- 윤영호 (2015), “FTA컨설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도형 (2013), “한국 중소기업의 한-EU FTA 활용 현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선자 (2008),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칠레,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철 (2015), “우리나라 정부의 FTA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윤희 (2016), “FTA 관련 기업의 내부특성과 외부환경요인이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 : 광주·전남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12권 제4호 , pp. 689-707.
- 정인교 (2009),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pp. 367-390.
- 정재승, 정윤세 (2013),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4호
- 정재완 (2013),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한 당면 정책과제의 연구”, 조세연구 제13권 제2집, pp. 145-172
- 정철기 (2008), “한,중FTA체결이 광주,전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농수산부문을 중심으로”,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0권 4호, pp.353-372.
- 조미진, 안경애 (201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와 국내기업의 FTA 활용 현황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36권 3호, pp. 83-105.
- 조준영, 원동환 (2012),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 방향 제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12권 3호, pp. 153-174.